

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관광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외국정부 간 양해각서·협정 등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관광객 유치 능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국가 관광객 유치를 전담하는 여행업자를 “전담여행사”로 지정·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(안 제12조의3 신설).
- 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속하는 관광단지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기준에 해당하는 관광단지는 해당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지정하도록 함(안 제48조, 제52조 등).
-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관광특구의 시설요건을 시·도 또는 특별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(안 제70조).

II. 검토의견

안 제12조의3제3항은 “제4항에 따른 전담여행사의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”를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안 제12조의3제4항은 “그 밖에 전담여행사의 지정·갱신·지정

취소 및 전담여행사에 대한 관리·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”에 관한 위임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전담여행사의 “지정 요건”에 대해 위임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.

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전담여행사 지정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안 제12조의3제1항에서 지정 요건을 “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능력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요건”으로 명확히 규정하고, “제1항에 따른 전담여행사의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”를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 요건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음.

또한, 안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전담여행사는 개정규정에 따른 전담여행사로 간주하도록 전담여행사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면서도 간주지정된 전담여행사의 지정 유효기간 및 그 기산점에 관해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음.

문화체육관광부와의 협의 결과, 법 시행 전 문화체육관광부의 「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」 업무 시행지침에 따라 전담여행사의 지정 갱신기간은 2년¹⁾이므로 현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담여행사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종전 지정된 날로부터 2년간 지정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는 안 부칙 제2조 후단을 신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음.

1) 제3조의2(전담여행사 갱신제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지정된 전담여행사에 대해 유치실적, 재정 건전성, 지역관광 활성화 기여도, 법·규정 위반사항 등을 고려하여 **2년에 1회 재심사를 통해 전담여행사 갱신 여부를 평가할** 수 있다. 단, 방한 중국 시장 현황 등을 감안하여 갱신주기나 횟수 등은 달리 정할 수 있다.

그 밖에 체계 및 자구를 검토 결과 경미한 자구수정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으며, 자세한 내용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전문위원 이 화 실)